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다. 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07. ~ 8. 16.)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심사 요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을 “(교통신기술 심사
비용 등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
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99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2조의2제
1항 후단 및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
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영 제9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7

호의1서식

3. 영 제9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

인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4. 영 제9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

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27호의3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과 같다

별표 8에 제2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만원	신청 건당

별표 8의 제1호에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수수료 산출기준”으로 정하고, 가목 “신청수수료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u>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 기준</u>) (생 략)	제43조(<u>교통신기술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영99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 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 표 8과 같다.
<u><신 설></u>	제48조(<u>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 서의 발급 신청 등</u>) ① 법 제102 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99조 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협 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 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 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 호 서식 2. 영 제9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7호의1서식 3. 영 제9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
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7호의
2서식

4. 영 제9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
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27호의3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
는 별지 제27호의4서식과 같다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

1.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수수료 산출기준

구분	금액	비고
1차 심사비용	100만원	신청 건당
2차 심사비용	100만원	신청 건당

※ 비고

1.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기관에 납부한다.
2.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
4.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만원	신청 건당

※ 비고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시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한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14일
지정번호	교통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명칭				
기술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신기술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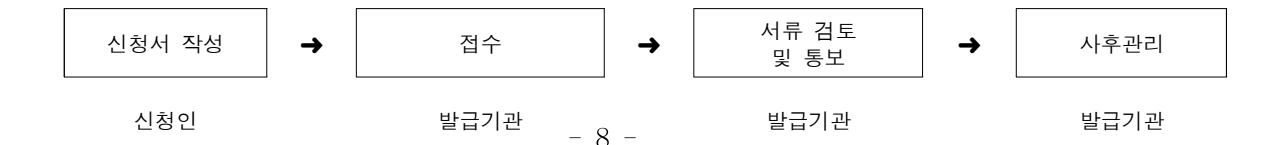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교통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20,000원
-------------	--	----------------

처리절차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1. 신기술 개요

- 가. 신기술번호: 교통신기술 제 호
- 나. 신기술명칭:
- 다. 기술개발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 가. 협약기간:
-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 라. 공사품질 관리:
- 마. 자재수급:
- 바. 기 술 료:
-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술개발자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신기술사용협약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 교통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교통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주)○○○(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년 월 일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지정번호	교통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기 술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기 술 범 위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전화: , 팩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